##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38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민홍철・우재준・김상훈

신영대 • 이건태 • 허성무

손명수 · 정준호 · 김기표

위성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 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면·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 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 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 3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보호운동"이란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운동을 말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을 둔다.
  - 1. 자연보호운동의 실천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 2.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조사·연구 활동
  -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천 및 홍보 활동
  - 4.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
  - ②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연맹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연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연보호중앙연맹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연보호 중앙연맹(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확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俯)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2의2. "자연보호운동"이란 생물
	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
	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한 사회운동을 말한다.
3. ~ 19. (생 략)	3. ~ 1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연보
	호중앙연맹(이하"연맹"이라 한
	<u>다)을 둔다.</u>
	1. 자연보호운동의 실천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2.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
	술대회 및 조사·연구 활 <u>동</u>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한 실천 및 홍보 활동
	4.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국내
	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
	②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제1항</u>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연맹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⑤ 연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